

## 원숭이두창 예방 및 행동수칙

### ◆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내원 시 주의사항 (표준주의, 접촉주의, 비말주의, 공기주의)

- 마스크 착용 및 개인적인 위생(손 씻기 등) 수칙 준수
- 오염된 손으로 눈, 코,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
- **의심환자 진료 시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필수**

- △ (원칙) 환자의 비말, 혈액, 체액, 피부 병변,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옷 등에 직간접 접촉하지 않도록, 장갑, 마스크(N95 급), 안면보호구, 가운 등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
- △ (의료진) 환자체액 분무 예상 시 보안경, 고글 착용, 환자 촉진 시 일회용 가운과 장갑 착용
- △ (의심환자) 수술용 마스크 착용 및 기침예절 준수 교육
- △ (이송 직원) 5중 보호구(장갑, 가운, 부츠, 안면보호구, 마스크 등) 착용

- 의심환자 진료 후에는 즉시 충분한 환기 및 소독을 시행

\* 제1급감염병 두창·페스트·탄저·보툴리눔독소증·야토병 지침의 부록3 소독제 종류 및 사용법 참조

### ◆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내원 시 신고방법

- 아래와 같은 의사환자를 진료 시, 질병관리청 콜센터(☎ 1339)로 문의 후 신고

#### ◇ (의사환자)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\*하여 원숭이두창이 의심되나,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

- \* **아래 원숭이두창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있고, 역학적 위험요인 1개 이상 해당 (단,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감염내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으로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로 판단 시 의사환자로 분류 가능)**

#### □ (임상증상) 원인 불명의 급성 발진과 함께 22년 3월 15일 이후의 다음 증상\*\*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

- \*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한 발진 제외: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, 대상포진, 홍역, 지카, 뎅기, 치쿤구니아, 1기 또는 2기 매독, 박테리아 피부 감염, 파종성 임균 감염, 연성하감, 성병 림프육아종, 사타구니육아종, 물사마귀, 알레르기 반응 등

\*\* 두통, 38.5도 이상 급성발열, 림프절 병변(림프부종), 근육통, 요통, 무기력감(심각한 허약감)

#### □ (역학적 위험요인) 증상 시작 21일 이내에 ①원숭이두창 확진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, ②원숭이두창 풍토병 또는 현재 발병지역 여행력 있음 ③여러 명 또는 익명의 성 파트너가 있는 경우

#### □ (발생지역) 서아프리카\*, 중앙아프리카\*, 영국, 포르투갈, 스페인, 스웨덴, 미국, 캐나다, 벨기에, 이탈리아, 프랑스, 독일, 네덜란드, 이스라엘, 스위스, 호주, 덴마크, 오스트리아, 체코, 아르헨티나, 슬로베니아, 핀란드, 아일랜드, 몰타, 멕시코, 아랍에미리트(22.5.31. 09시 기준)

- \* (원숭이두창 풍토병 국가) 베냉, 카메룬, 중앙아프리카공화국, 콩고민주공화국, 가봉, 가나(동물에서만 확인), 코트디부아르, 라이베리아, 나이지리아, 콩고, 시에라리온

### ◆ 원숭이두창으로 의심환자 진단검사 후 배제진단 위한 잔존검체 보존